



지방화 시대에 있어 환경행정 정비방향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본 발문은 세계화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난 환경영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환경영정 정비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볼자 이을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한상욱 / 아태환경경영연구원

I.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개막

21세기의 문턱에 다가선 지금,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이 크게 변화해 감을 피부로 느낀다. 브라질 리오에서의 세계환경정상회담과 “Agenda 21”의 채택,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 그리고 금년부터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은 21세기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질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조류는 이념논쟁과 냉전의 종식에 따라 보호무역이라는 소극적·방어적 자세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의 번영과 함께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보호라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그 흐름이 변화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경제권(One Global Village, One Global Economy)”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는 결코 우연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다. 지난 수세기동안 인간은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로 향유하며, 물질적인 부(富)의 축적을 쌓아왔다. 인간은 자연자원이 무한하며, 비록 한가지 자원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종류의 자원이 발견되거나 개발되어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산림의 벌채,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등으로 물과 공기의 오염은 물론, 오존층파괴, 지

구온난화, 생물종 감소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물질적인 번영 자체가 인간의 생존터전을 위협하게 되는 오류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논의는 ’70년대의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파괴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필두로 ’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인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타임을 제시하였고, ’92년 리오에서 열린 세계환경회의에서는 이의 행동강령이라 할수 있는 “Agenda 21”이 채택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각국의 의무와 대응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 모두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협약들은 미가입국 또는 가입국중 의무 불이행국에 대해 무역규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이제 환경과 경제는 하나의 유기적 통합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선진 각국들은 환경보호를 명분삼아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국내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들면, 미국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개정하여 ’94년 이후 수입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규정이상의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킬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덴마크는 수입업자가 식음료 품의 용기를 회수 처리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공정의 개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세계환경시장도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미국·일본등은 앞다투어 환경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환경문제를 그간의 경제발전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여 사전예방적인 환경배려가 소홀하였음은 물론, 사후 보완적인 조치마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환경정책은 경제정책에 밀려 표류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산업생산시설과 개발계획과정에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된 환경을 사후에 복구하는 노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Agenda 21)' 제 28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 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 내용에 의하면 1996년까지 각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적 광역환경정책의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지탱 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위해 시민을 교육시키고 참여시키는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UN은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를 설립, 각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한 기업규제나 지방정부의 통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주민 스스로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구호에 부합되는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가와사키현,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영국의 맨체스터시 등 일부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선언과 행동강령 및 개발지침들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대한 공식

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지방화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거쳐 이제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의 결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지방자치행정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의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생활행정이면서 종합행정이다.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환경정책, 행정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경행정은 종합성과 현지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행정은 단순히 기업의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정도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개발과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 외에도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려는 노력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환경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각자의 생활터인 각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처럼, 지탱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부터 다양하고 창의적인 환경보전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지난 환경행정의 회고 및 반성

우리나라는 1960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공업위주의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62년 대비 92년의 1인당 GNP는 82배, 전력소비량은 78배, 자동차수는 180배로 늘어난 반면,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추세로 진전되었다.

대기질은 유황함량이 높은 연탄, 벙커C유의 소비증가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대도시와 공단주변은 환경기준의 초과가 일상화되었다. 수질의 경우 오염요인이 되는 생활하수가 년 7%, 산업폐수가 년 20%씩 증가하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크게 부족(92년 처리구역 인구 37%)하며 상수원의 60% 정도가 2급수를 밑돌고 있다. 특히 도시 및 공단주변과 항

별기고

만 및 도시, 공단연안의 수질은 산업용수로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폐기물의 경우 산업활동과 소비활동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부족과 감량화, 자원화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부적정처리로 토양은 물론 하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산업폐기물의 공장내 적체는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경우 늘어나는 개발수요에 따라 농지와 산지가 감소하고 있고, 연안매립의 증가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가중으로 인해 멸종위기와 감소추세에 있는 야생동식물종은 현재 약 180여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화학공업의 성장 ② 공업단지의 조성, 발전설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③ 자동차의 급증 ④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⑤ 국민의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레크레이션, 리조트산업의 확대 등, 문제의 잠재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어 환경대책이 획기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한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회고하여 보면 70년대 후반까지는 일부 환경단체와 학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을 뿐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거의 방치된 상태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 환경정책이 태동하고 헌법에 환경권조항의 삽입과 관련정책 및 제도정비와 함께 각종 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미흡하여 대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90년대에 들어와 환경문제의 사회문화화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국가전체적으로 대응하여야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여건 및 경제개발과 맞물려 발전되어 왔는 바,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실업과 빈곤으로 부터의 탈피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을 수립하였고,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공장들로 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될 공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63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공해방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내에서 공해물질 배출공장을 신고토록 하였다. 이를 다를 기구로서 ’67년 보건사회부내 보건국환경위생과 공해계를 두었으나 공업화위주의 성장정책이 국가정책상 상위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공해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그나마 제정된 법의 집행이 형식에 불과하였던 환경정책부재의 시기였으며, 또한 지방행정기구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함께 원자재의 수입에 의한 상품의 가공수출에 주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대도시, 공단, 배후도시의 가정하수 및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확대되었다. 정부는 공해방지법 만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총량규제, 환경기준설정, 자동차배출가스규제, 농경지오염방지비용부담, 방지시설등록,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등을 포함한 환경보전법을 77년 제정하였고,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관실내 공해담당관, 위생국 공해과, 환경위생국 공해관리관, 환경관리관실 등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관련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이 여전히 국가정책상 최우선에 자리했고,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이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요인이 된은 물론 환경문제가 북한의 대남비방활동에 쓰여지는 상황이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거론조차 금기시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고 기업도 환경투자비용을 과외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부주도형의 행정체계는 지방행정기구마저 전국적으로 획일화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을 저하시켰으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무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기구가 참여하였으나, 오염투기행위의 단속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1980년대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의 부가적 결과로서 전국적인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폐적인 환경욕구에 부응하여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사회부문을 통합하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2~86)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성장과 환경의 조화개념이 대두되어 중앙환경행정 전담기구로 '80년 환경청을 신설하고, 81년 6개소의 지방환경측정 관리사무소, 84년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임시기구), 86년 두 기구를 합친 6개 지방환경청의 설치 등 기구를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적 법적 조치로서 '81년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기관의 확대, 배출부과금부담제, 생활소음규제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법을 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 86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84~2001)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재정적인 취약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현지집행성이 강한 업무(환경시설의 설치허가, 단속, 처분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환경규제 업무와 광역적 자치사무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속성을 요구하는 현장 단속 등의 업무마저 그 효율이 저하되었다고 하겠다.

• 1990년대

성장위주의 강력한 산업정책에 가리워져 소홀히 다루어졌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시기이다. 정부는 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그해를 “환경보전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 각 부처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기 종합계획 및 정부, 기업, 국민의 환경보전지침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의 선언을 비롯하여 법령, 제도의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므로써 각종 계획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추진되게 되었으며, '92년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을 채택하고, 잇달아 자연환경보전 10개년계획,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자원재활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법령에 있어서는 '90년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한 14개의 개별법으로 분리·정비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의 확대와 환경과학기술의 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기술개발연구원의 신설, 지구환경기획단 및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설치되고, 년중 발생되는 수질오염문제와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94년에는 건설부 상하수도국, 보사부 음용수관리과, 국립보건원 수질검사과를 환경처로 이관하였으며, 4대강 환경관리체제로 지방조직을 개편하였다. '95년부터는 환경처가 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장기계획의 제시, 법령의 정비, 기구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행정은 여전히 예방위주가 아닌 사후처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환경부가 각 부처의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과감한 업무이양을 기피하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접근과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다. (표 1 참조)

〈표 1〉 경제발전과 환경정책 변천

| 경제개발계획 | 환경정책의 위상 | 환경관련입법 | 환경행정조직 |
|---------------|---------------------|--|--|
| '61 이전 | 관련정책 부재 | · 오물청소법(61) | |
| 1차 (62~66) | 관련정책 부재 | · 공해방지법(63)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63) | |
| 2차 (67~71) | 관련정책 부재 | | · 보사부 공해계(67) · 보사부 공해담당관(70) |
| 3차 (72~76) | 환경정책의 태동 | | · 보사부 위생국 공해과(73) · 보사부 환경위생국(75) |
| 4차 (77~81) | 보전행정의 일환으로 다루어짐. | · 환경보전법(77) · 해양오염방지법(77)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79) | · 보사부 환경관리관(77~79) · 국립환경연구소(78~85) · 환경청(80~89) |

특 별 기 고

| 경제개발계획 | 환경정책의 위상 | 환경관련법 | 환경행정조직 |
|---------------|---|--|--|
| | | · 헌법에 환경권조항(80) | · 한국자원재생공사(80) |
| 5차 (82~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환경의 조화 개념 대두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84~2001(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법(82) ·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83) · 폐기물관리법(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환경정책대책본부(82~84) ·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84~86) · 환경기술감리단(84~93) · 환경보전위원회(85~) · 6개 환경지청 설치(86~) · 국립환경연구원(86~) |
| 6차 (87~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 · 환경보전원년선업(90)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공단법(87) · 환경정책기본법(90)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90) · 대기환경보전법(90) · 수질환경보전법(90) · 소음진동규제법(90) · 유해화학물질관리법(90) · 자연환경보전법(9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91)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91)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공단(87~) · 환경처(90~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91~) |
| 7차 (92~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92) · 신경제5개년계획(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 · 환경영향평가법(93) · 환경개선특별회계법(93) · 먹는물관리법(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공무원교육원(92) ·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92) · 지구환경대책기획단(92) · 한국환경기술개발원(93) · 환경부 출범(95) |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연계되어 「자연환경보전 10개년계획」(93), 「국가폐기물종합계획」(93), 「자원재활용계획」(93) 등의 분야별 계획이 수립됨.

(출처 : 허남훈, 1994, 국가발전전략과 환경, 아산재단초청 주제강연)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관련법규는 총 70여개(환경 소관 환경법은 24개), 유관 중앙행정기관은 2처 9부 1청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행정의 기능별 분화가 심하여 조정통합이 곤란하며, 모든 법률이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종속적으로 돋는데 그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92년 현재 환경관계법 규 13개를 대상으로 한 1,573건의 처리사무 현황중 64%인 1,006건을 당시의 환경처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였고, 자체는 29%인 462건만을 처리하였다. 또, 자체의 462건의 사무중 72%는 도단위에서 처리하고 나

머지는 시·군·구 단위에서 처리하였다.

즉, 환경행정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사무도 기관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행정기능의 과도한 중앙집중화는 공해업소로 부터의 배출오염물질을 감시·단속할 관할 구역이 너무 넓고, 인력부족으로 오염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곤란하며, 환경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이중행정의 폐해가 발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시행될 수 없는 환경관리를 초래하였

〈표 2〉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 대 표 적 인 국 가 들 | 특 성 |
|--|---|
| 【 제 1 그룹 】 덴마크,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 충분하게 명료한 규정 시스템, 높은 공공 기대, 대부분 완전히 발전된 환경 기관산업들을 갖는 환경선도 그룹 |
| 【 제 2 그룹 】 호주, 캐나다, 필란드, 프랑스, 뉴우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 전지구적 환경 청지기정신 이슈로 급속히 변화하거나 참여하기 시작한 그룹 |
| 【 제 3 그룹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타이완 | 아직까지 환경 이슈가 약하게 관리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룹 |
| 【 제 4 그룹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페루,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타일랜드 | 고려할 만한 산업 능력과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환경 요구와 기대가 초보단계에 있는 그룹 |

(자료 : Prism first Quater, Arthur D. Little, 1994)

고, 다양한 환경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부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정책수준을 세계속에서 평가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하위 수준이며, 중상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기업 경영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III. 지방화의 활성화와 환경에의 영향

지방화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지금까지의 환경행정부가 중앙집중식이었던 결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노력하기보다는 재정확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 우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간 개발경쟁이 가속화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광역행정상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면 지역개발권이 증대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반면, 환경보존과 쾌적환경창조에 대한 권한도 아울러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지방화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신

장됨을 뜻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공해성 기업의 입지를 반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 진다. 세째,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 국가환경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지방정부나 지역주민,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지방환경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예방책의 마련과 함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적극추진이 지방환경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IV. 지방화시대의 지방환경정책 및 행정체계 정비방향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환경정책이나 환경행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변화, 발전해가고 있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둔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환경행정체계 정비방향을 살펴본다.

1. 지방환경정책수립의 원칙



별기 2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원칙으로는 첫째, 지금까지의 사후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단매체적 관리정책에서 환경다매체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정책은 폐기물관리,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등 환경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이어서 환경매체간에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맹점이 있었다.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에너지, 동식물보호 등 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 환경정책의 대상은 지방행정상의 모든 부문과 연계, 적용되어야 한다. 한 지역의 환경은 관련 행정부문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째,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급한 공업화나 도시개발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상 지역주민이 우선이라는 기본전제 외에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문제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겠다.

끝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이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환경행정체계 정비방향

1) 복지에 근거한 실천가능한 목표의 설정

환경과 관련된 지역의 복지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생태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호대립관계에 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갈등관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두 부문의 정책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즉,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두 정책을 접목시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수립에 있어 복지에 근거한 달성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개발과 환경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발목표설정이 환경을 전혀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양자가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적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해당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심영역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기, 수질 및 토양등 자연자원의 보전이며, 개발적 측면에서는 주택건설, 공장건설, 고용증대, 도로건설, 식량증산 등이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과 개발적 측면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개발정책도 지역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 사회경제적 여건변동과 과학기술의 진전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확정된 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수단과 방법을 지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나 과학기술정보에 따라 수정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 협조를 위해 정책형성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은 대단히 중요하다.

- 지역내적인 문제는 물론 지역외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는 지역내적인 문제일 뿐더러 외적으로 타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의 관계는 물론 국가적, 지구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만 여러가지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2) 환경자원의 총체적 파악과 적절한 관리

앞으로 계속적인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교통망의 정비, 각종 개발등에 의해 환경자원을 잃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문제와 자원, 에너지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환경자원의 적정 분배 및 이용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자원을 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넓이나 부존량의 측면도 병행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오염현황과

각의 관점에서 실시되어 온 대기, 수질등에 관한 조사와 자연환경보전 관련 기초조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환경자원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자원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차원의 환경자원관리의 기본적 틀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자원과 희소성이 높은 환경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관리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경자원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이 처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감안해서 환경자원의 보호, 이용, 창조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환경행정의 목표는 주로 환경기준에 의해 환경의 오염상태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왔지만 환경자원의 부존량이나 분포상황등에 대해서도 목표를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자원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메카니즘, 환경용량, 지역주민의 폐적성에 대한 선호등을 감안한 '환경지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환경보전수단의 종합체계화 및 활용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는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발계획과 환경계획(기업의 경우 모든 경영분야에 환경문제 고려)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하여 단매체적 접근에서 다매체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업무협조관계도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짐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양계획이 조화를 이루고 실효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출규제수단이나 자연공원등에 있어서 각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덧붙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그 자체를 적극하게 유도하기 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대책, 용자·세제등의 시책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나 주민의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 유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이 배려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적절하고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되는 몇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유효한 정보를 축적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예측, 평가기법을 정비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토지이용, 입지대책 등의 적정화 도모

토지이용의 적정화 등 입지대책을 통한 환경보전은 오염요인의 사전배제 및 토지의 환경용량을 적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책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생산, 수송등의 도시활동이 행해지는 장소와 주거와의 거리를 시작으로 한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치등에 의해 공해가 생기지 않는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공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공해 수송체계의 형성 및 교통시설 주변 토지이용의 적정화를 시도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공해방지 계획을 책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 주변에 녹지대의 정비나, 창고, 사무소등 교통공해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추진하는 등 적정한 주변토지이용도 중요하다. 호소등의 주변 자연환경은 수역과 일체가 되어 귀중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질의 정화기능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수성의 확보, 향상과 그 적절한 보전을 도모해야 한다.

◦ 자주적 환경보전활동의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맡아야 할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 앞으로 자유시간의 증대나 인구의 고령화,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를 배경으로 고령자나 가정의 주부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가의욕이 증대될 것이며, 지역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자주적활동의 확대가 기대되어진다. 이를 위해서 이후 미화청소활동, 생활오수처리대책 실천활동, 생활소음의 자제, 자연보호를 위한 지원활동 등 자주적 활동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의 보급·육성을 시도하기 위해 강습회의 개최, 자재, 정보의 제공등을 하는 것외에 우수한 활동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활동의 보급·촉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별기고

4) 환경관리기반의 총체적 점검과 재정비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는 자원의 이용, 생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야기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그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를 파악, 예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바, 실상의 파악과 장래의 예측 및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환경과학기술의 동원, 교육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도모, 환경정보시스템의 확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환경행정의 수요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도 검토되어야 한다.

5)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 유도

세계적인 환경보존의 단일규범화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지방화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위 환경친화적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획 및 통제와 더불어 초일류화와 환경우수성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필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환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이다. 또

한, 환경영영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률규제, 환경리스크, 사회적 여건, 경제구조 및 경쟁관계에 대응하면서, 사전에 수립된 환경실적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방법론 또는 기본틀을 의미한다.

UN에서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년에 걸쳐 전세계 794개 다국적기업중 년간 매출액이 10억불 이상인 2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4개의 서로 다른 경영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규추종형 경영, 예방적 경영, 전략적 환경영영, 지속가능한 개발경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기업은 사후처리나 규정준수 및 보고에만 급급한 법규추종형의 수동적 기업으로부터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판매정책으로 세계를 내다보는 사회책임주의 기업으로의 향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 내용도 지시, 통제 등 규정준수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정보를 수용하고, 정책결정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통합하는 등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표 3 참조)

〈표 3〉 기업의 '환경, 건강, 안전'을 위한 4가지 경영수준

| 경 영 형 태 | 기 업 활 동 | 정 부 의 지 원 활 동 |
|---------------------------|--|--|
| I. 법규추종형 경영 수동적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후처리(End-of-pipe solutions)저감절차(Abatement procedures)모니터링(Monitoring)규정준수보고(compliance reports)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Emergency respon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현실적 규정(Realistic regulations)규정제정시 기업 참여(Involvelement of business in designing regulations)규정의 통보(Inform on regulations)엄격한 시행(tough enforcement) |
| II. 예방적 경영 (예방적인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부심사(Internal audits)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공공에 대한 정보안내 (Public information)에너지 보전(Energy conservation)환경적 계정(Green accoun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뢰성 확대(Increased liabilities)폐기물처리 요구 (Waste treatment requirements)매립억제정책 (Restrictive landfills policy)지역주민에의 공지 (Community right-to-know)에너지 보전(Energy conservation)과세(Taxation) |
| III. 전략적 환경영영 (기회모색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과 대화(Public dialogue)외부심사(External audi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정적인 법제의 마련 (Stable regulatory buile-up) |

| 경 영 형 태 | 기 업 활 동 | 정 부 의 지 원 활 동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Disclosure) · 계획에 있어 환경 · 건강 · 안전의 통합 (Integration of Eh & s in planning) · 요람에서 무덤까지 (Cradle-to-grave policy) · 환경친화적 연구개발(Green R & D) · 환경, 건강, 안전 목표수립 (Setting EH & S targe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마크 프로그램 (Green labelling programmes) · 소비자와 환경친화적 그룹지원 (Support of consumer and green investor groups) · 시장기능수단의 제도화 (Market means of regulation) · 자발적인 규정(Voluntary regulations)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특전 (R & D tax-breaks) |
| IV. 지속가능한 개발경영 (사회책임주의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프로그램의 개발 (Developing country programmes) · 환경친화적 판매정책 (Ethical sales policies) · 국제적 공표(International disclosure) ·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Climate change policies) · 조림 프로그램 (Afforestation programmes) · 세계를 내다보는 정책 (World-wide policies) · 국제적 심사(International audi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정보의 확산(International information dissemination) · 정책결정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통합(Integration of SD objectives in decision-making) · 환경법 · 기준의 국제적 조화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or standards) · 국제적 세제에 참여 (International taxation) |

* 출처 :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ransnational Corporations – Report on the benchmark Corporate Environmental Survey(1993), UN Environmental Series No.4, p.168.

V. 중앙과 지방의 환경행정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의 기본전체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하여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환경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분담전에 고려해야 할 전제요건을 다음과 같이 들수 있다.

첫째, 행정목표의 설정과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 국가경쟁력확보, 지역발전 등의 이유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들보고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기업과 지역주민들간의 대립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유리하게 될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행정의 경우 규제범위의 불안정에서 제기

되는 문제가 있다.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 중심으로 보면 규제의 범위가 축소되고, 피해자 중심으로 보면 피해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행정에 있어 중앙집권의식의 관료주의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피해발생 후 대책마련 등의 추종식 행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추궁, 주민 불이익이 유발될 수 있다.

넷째, 가해자의식의 부재이다. 기업은 규제로 부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주민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세심한 사전배려가 있고난 후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행정업무분담이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의 경우

지방분권화체제를 국가통치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

특별기고

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환경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에서 중앙으로 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여왔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환경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조정의 어려움, 환경오염방지행정의 전문성 요구, 환경질의 향유에 따른 형평성의 논리가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환경관련부서를 설치하고, 환경오염방지입법을 통해 환경기준 등을 제정하였고,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방교부금제도 등을 운영하여 지방정부의 환경개선정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개입은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는 정책을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형식의 기능분담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환경정책의 개발, 환경정책의 지역간 조정과 통제, 환경관련 연구개발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지침하에서 자기지역의 환경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 집행하면서, 당해지역에 입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3. 역할분담의 원칙 및 내용

먼저, 현지집행성이 강한 업무(환경시설의 설치허가권, 단속권, 처분권 등)를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및 위임을 통해 자치업무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행정 조직강화와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처리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결정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실시에서는 중앙의 책임자각이라는 협력관계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행정기능, 관리기능의 분담 뿐만이 아닌 환경재정상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유도 지원하면서 이들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정책틀 속에서 지역주민의 환경적 욕구를 구현하도록 이를 집

행하여야 할 것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

- 모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업무의 입안 및 집행
-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업무 수행
- 환경관련 연구개발(R & D)에 대한 지원
- 대규모 개발업체, 환경오염원의 감시와 통제
- 지자체의 상위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관심 및 지원활동)
- 지자체간의 갈등 조정
- 관련 각종정보와 자료의 제공
- '지방의제 21' 작성 및 실전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환경기준의 작성, 지역환경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 지역환경오염도의 독자적 측정과 분석
- 환경오염원의 감시와 통제
- '지방의제 21' 작성 및 실천

VII. 맺는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공시설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지탱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건설할 책임과 추진할 권한을 갖게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지역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환경윤리를 확립하고 그를 토대로 '지방의제 21'을 작성 ·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환경관리대상의 확대 및 이를 담당할 사회 각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고, 행정과 민간부문간의 기능분담을 밝혀 행정의 범위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한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의 실천은 지역적 차원에서, 대책은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1993) 경제백서
- 김기준(1986) 환경기술론, 김기준논문 · 총설선집 : 3-24
- 김일태(1995) “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환경보전 95.4 : 20-28
- 서울시(1994) 1994 서울시정
- 우동기(1994) “서울시와 외국도시의 Local Agenda 21 실천계획비교”,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웍샵 : 45-67
- 이두호(1983) “환경행정조직의 효율성분석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욱, 한상욱(1994) “Managerial Apporach to the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2, No.1, pp. 7-25
- 이정전, 신의순(1991) 환경개선촉진을 위한 정책발전 방안 연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18-48
- 이형구(1992) 21세기 경제정책의 대전환, 고려원, 서울 : 15-47
- 정희성(1994a)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한국환경 · 사회정책연구소 세미나자료 : 5-32
- 정희성(1994b) “중앙 · 지방정부간 역할분담과 환경 재정” 환경과 사회 ’94 가을호, 한국환경 · 사회정책 연구소 : 17-25
- 정희성(1994c)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 한국환경정책학회 ’94세미나 자료집 : 47-73
- 조진상(1995)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환경정책의 방향”, 환경보전 96. 4 : 14-19
-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1992) “국가와 지방간 환경 분야기능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38
- 한상욱(1993a) “환경의 실상과 대응방안”,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 교재
- 한상욱(1993b) “환경경영의 실상과 대응방안”, 쌍용 그룹중앙연수원 교육자료
- 한상욱(1994) “환경문제의 진전과 기업의 대응방안”, 아태환경경영연구원
- 허남훈(1993) “국가발전전략과 환경”, 아산재단 초청 주제강연
- 허남훈(1994a) “현대기업의 환경영영전략”, 로터리클럽 초청 주제강연
- 허남훈(1995) “경제발전과 환경정책”, 나라경제 95년 4월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환경보전실무계획반(1981) 환경보전부문계획(1982~1986)
- 환경처(1994) 환경백서
- Carson, R.(1965) Silent Spr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Callenbach, E, F. Capra, L. Goldman, R. Lutz and S. Marburg(1993) Eco Manage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p.157.
- Meadows, W.W, D. L. Meadows, J. Randers and W. W. Behrens III(1972) The Limits to Growth, London, Pan Books
- S Noble Robinson(1994)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Environmental Policy” Pism first Quater, Arthur D. Little, Massachusetts, USA pp.53.
- United Nations(UN)(1993)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ransnational Corporations – Report on the Benchmark Corporate Environmental Survey, UN Environmental Series, No.4, p.168.